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4. 8.(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보고안건 가>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결과 공개 시,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고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 (2015-16-07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하여 공고하되, 동 규정 제3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의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한액의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 조정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그 밖에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한액 조정방안으로 먼저 <제1안>은 물가상승률과 현행 상한액 설정 당시 출고가에서 상한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법 시행 후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과 제조사의 장려금 추정액 그리고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이용자 복지혜택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우리 티타임, 간담회 때 여러 차례 사무처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의안에는 아주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어서, 상한액을 올려 줘서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키자, 이렇게 이유를 제기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다면 상한액을 올리면 이용자 혜택이 증진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직접적으로 단말기 구입에 관련된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혜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선 이통사들이 그 상한액을 써야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상한액 30만원이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이통사로 하여금 지원금을 더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상한액을 30만원으로 하다 보니 단말기의 유형, 즉 종류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단말기인 경우에는 29만원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27만원의 상한액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비하면 분명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어떤 기종이지요? 또 얼마나 많이..., 몇 퍼센트나 이용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저희들이 표현상 '주력 단말기'라고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이동사들을 한 이틀 동안 파악하고, 어제 밤에 집중적으로 취재한 것입니다. 이동사들이 가장 많이 팔고자 하는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4월 10일 신상품 갤럭시S6가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 갤럭시S5를 제일 많이 팔아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재고품 정리 차원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 갤럭시S5에 주는 지원금 공시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3사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난 4월 6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바에 의하면 KT는 공시금액이 26만원이고, 이에 따라서 유통점에서 15%를 추가하면 29만 9,000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3사 모두 주력 단말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공시가는 분명한데 어제 현재 공시가가 SKT 유통망...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SKT는 20만원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3만 5,000원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이 공시될 때마다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현재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주 특별한, 특이한 경우를 예로 제시하지 마시고 평균적인,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갤럭시S5를 제일 많이 팔아야 하니까 지원금을 제일 많이 주어야 하는데 23만 5,000원입니다. 어제 현재 공시가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어제 기준으로 한 것이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어제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30만원 상한액보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굉장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폰6 16G는 나온 지 몇 달 됐지요? 6개월을 넘어서면 엄청나게 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고, 15개월이 넘어서면 상한액이 규제받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60만원도 주고, 70만원도 줍니다. 지금 몇 달 안 된 아이폰6는 6개월만 넘어서면 지원금이 얼마 더 늘어나겠지만, 어제 현재 공시가가 15만원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불러줄 수 없는데 지금 상한액 가지고 이용자 복지혜택을 늘리는데 장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 현장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아무리 상한액을 높여도 이통사들이 지금보다 더 마케팅 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가령 상한액을 높여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높일 경우에 전국에 5만 몇 천 개 되는 판매점, 유통망 그분들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통사들은 마케팅 경비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원금을 높일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면 유통점에 주는 마진에서 빼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범위 내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유통망들에게도 매우 불리한 인상입니다. 통신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기기가 많이 팔리고, 그래서 유통망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는 실질적으로 허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 드리지만 지금 상한액을 높여서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30만원 상한액에 상응해서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책정하게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도 자기 폰을 가지고 가는 이용자에게만.... 지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자기폰, 중고폰이든지 선물 받은 것이든지 자가폰을 구입해서 가지고 가는 이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7%입니다. 월 평균 5만여명이 이통3사에 가입한다면 그중에 1.8%, 1.7%, 90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극소수의 대상자들에게 주기 위한 요금할인을 인상을 위해 방통위가 어렵게 토론하고 6개월 전에 합의해 놓은 이 상한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제2안>처럼 올릴 경우에, 요금할인율을 그것에 상응해서 한다면 미래부가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과 무관하게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상한액을 올림에 따라 요금할인율이 올라가서 이용자 차별이 생기면 문제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입법취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지요. 미래부발 상한액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열흘 전 6개월 된 시점에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티타임, 간담회에서 논의할 의안도 안 뒀습니다. 일주일, 열흘 지난 뒤에 갑자기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상향해야 하니까, 이것을 논의 해야겠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액에 상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주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양 쪽에서 협의가 이루어 졌는데, 이것을 올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잘못하면 단말기유통법상 역주행입니다.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이 안 되게 하기 위해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높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한액을 높여주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전에 양 사무처 간에 다 협의해서 “너희들이 먼저 올려라.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제가 법을 유심히 분석해 봤는데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16%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더 올리면 단말기유통법 입법취지의 위배이고,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현행 우리가 정해 놓은 상한액 30만원 선을 손대지 않고 미래부가 인상할 수 있는 요금할인율은 16%입니다. 현행 12%에서 16%로 올리는 것도 4% 포인트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12% 현행을 미래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20%로 올린다면 무려 8% 포인트를 올리는 것입니다. 인상

를 70%입니다. 어떤 공공 물가정책에서 70% 인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20%로 올린다면, 기존 절대 다수의 기존 가입자, 이용자들은 12%로 고정해 놓고 새로운 가입자, 1.7%의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이용자 혜택 증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다수를 극심하게 차별하면서 그것을 내세워서, 소수 이용자의 조그마한 혜택을 보편적 이용자 혜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기존의 가입자, 12%에 묶여 있는 대상자,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은 20개월이 지나야 갑자기 오른 혜택을 겨우 볼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액 상향 조정, 또 미래부가 곧 발표할 요금할인을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만입니다. 왜곡입니다.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을 극심하게 차별하면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을 내세워서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공공정책을 입안·결정하는 당국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방통위의 직무수행이 과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1조가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을 지켜서 국민의 이용자 복리증진, 이용자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들 각자는 외부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KT 제재건을 의결해 놓고 집행은 무기한 보류, 집행유예, 이런 상한액 상향 조정, 미래부가 먼저 주도해서 하자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 방송광고제도 개선안 입법예고를 다 마련해 놓고 아직 의결을 미루고 있는 것들이 과연 방통위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규제기구냐, 의문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독임제 부처입니다.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다양한 상임위원들이 참여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토론하고 합의한 것을 독임제 행정기구가 이끌어가는 정책에 맞춰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국민 선심정책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큼니다. 더군다나 보궐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거도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거 정국에서는 잘못하면 선심성 정책이라고 오해 받습니다. 그리고 현행 휴대폰 지원금은 근본적으로 상향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인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국민 혜택 증진을 반대할 정책당국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다수의 이용자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 극소수의 이용자 혜택만을 위한 공공정책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1차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고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부에서 결정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의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지원금 상한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부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기준」 고시에 의하면 제3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제1항에서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지원금, 앞으로의 지원금 상한은 요금할인율 결정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고시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사전 토론의 전제가 틀린 것인데,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인상하는데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방통위가 뒤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상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경우에 저희들이 현행 유지를 하면 그 괴리가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괴리가 커지니까 그렇다는 이유이고, 그래서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상응해서 해야 할 그 기준이 되는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미래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향을 검토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경우에 저희들이 현행을 유지하면 그쪽에서 얼마를 올리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그 폭은 더 커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부는 독립제 부처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들이 계신 합의제 부처입니다. 그래서 각자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독립성 차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국가기관이고,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협의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부처가 하니까 어디가 따라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부가 무엇을 하니까 저희가 따라간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관해 서로 협의해서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오후 2시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책 공동발표를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그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함께 참여한 합의기구로서 독립제 행정정책기구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동발표하거나 사전협의를 불가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독립성이 생명인 한국은행이 정부에 소속된 기재부나 어떤 경제기

구와 공동발표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에게는 한국은행보다 훨씬 더 독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오늘 안전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것이나 제 의견을 말씀 드리기 전에 김재홍 위원님이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하셔서 우선 그 두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은 저희가 출범초기부터 많이 논의해 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통위의 정체성이나 직무수행의 독립성,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저는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정책조정회의 이런 각종 정부 내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부처 간의 업무협조, 정책공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부위원장님이나 때로는 제가 차관급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활동 중의 하나인데 무조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 아까 SKT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위원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면 그 안을 이야기한 당사자로서 저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교환 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SKT 제재 의결 집행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SKT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여기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독립성의 문제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인데 방통위설치법 제1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8조 제2항은 이런 것입니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처벌규정은 없으니까 선언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제1조입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그 자체입니다.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되는 것들이 최근에 정말 많기 때문에, 정부부처간 협의, 제가 그것은 아까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부처의 통합운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기부양책, 경기활성화 정책에 방통위가 과연 정책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합니까? 규제기구로서 규제를 먼저 해야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부처와 함께 어떤 정책을 공동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아까 예를 든 한국은행이나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훨씬 더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그것이 핵심인 정책 규제기구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정책결정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자꾸 그것을 말씀하셔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사항이 방통위설치법 제12조에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에 제1호~제15호까지, 그다음에 제17호~제21호까지, 제2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방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의 한 곳으로서 다른 행정부처 사이에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저희만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 안건을 심의했으면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안건도 상정이 가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 심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 드리면 좀 더 논의의 시간이 충분했으면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논의하고 의결을 진행하는 것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사 사안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지원금 상한 사항 논의는 절차적 합리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처 간의 협의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때 저희들이 굳이 거기에 역행할 필요가 없고, 권한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협조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의 주무를 구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이나 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 판단은 조금 다르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의 핵심은 지원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입니다. 지원금 상한 공시나 지원금 차별 지급금지, 지원금 과다 지급금지 등 지원금 제도를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6조에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혜택 정도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금 상한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법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미래부가 선제적으로 요금할인율을 2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지원금 상한을 상향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는 썩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시를 말씀하셨지만 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법 어디에도 요금할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금 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단말기유통법 체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 또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안건에 대해 묻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이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이런 형태로 왔는데, 우리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보면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논의를 하는 것은 고시 제3조 제1항에 의한 것입니까, 제2항에 의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2개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2항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 6개월이면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엄밀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마다'를 조금 여유 있게 해석한다면 지금도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가 이러한 검토를 갑자기 했다, 검토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위원님들마다 관심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략 6개월, 그것이 4월 1일이든 3월 말이든 그 시점을 한 번 쪽 생각해 왔던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정해 놓고 느닷없이 2개월, 3개월 됐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티타임 형태로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2시에 미래부와 합동브리핑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라는 것은 티타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우선 보입니다. 그런데 고시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우리가 관보를 통해 상한액을 결정해서 공고를 하는데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해 놓고 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소위 말하면 ARPU가 대표적인 수치이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1일에 지원금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시행된 이후에 이통사들의 평균이익과 관련해서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10월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IR(Investor Relations)자료를 통해 10월, 11월, 12월, 2014년 4분기 ARPU 자료는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금년 1/4분기는 아직 잠정적인 것도 없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작년 4/4분기에 ARPU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요금이 그동안 인상되지는 않았지요?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이후로 마케팅비가 감소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마케팅비가 감소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번째,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은 작년 4/4분기 내지는 금년 1/4분기까지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어떻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에는 줄어들다가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난번에 우리가 SKT에 대해 단독조사하고 제재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제 기억에, 지난 3월은 잘 모르겠는데..., 3월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고, 2월은 흔히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시계열적으로 보면 많이 감소된 상황 아닙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2월, 3월은 감소 추세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3월도 그렇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3월은 더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세 번째 사항, 시장점유율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사업자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세가지 고려요인만 놓고 보면 시장은 작년 한 때 '아이폰 대란' 그러면서 과열됐거나 아니면 금년 1월 중·하순경에 SKT의 단독 과열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을 보면 많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침체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원금 규모가 저희는 상한을 3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통사들이 공시하는 지원금은 저희가 기대했던 또는 상한으로 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용자, 국민들, 소비자들의 편익을 방통위 차원에서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지원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한을 정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그 상한에 맞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얼마만큼 지원금 규모를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권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면 지금보다는 지원금을 더 올리지 않겠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ARPU를 보고 그간 마케팅 비용을 보면 적정한 선에서는 더 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이라면 저는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책결정,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특정회사의 특정 단말기와 특정사업자의 지원금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거기에 좌우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전체 시장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용자 차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상 27만원 했을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정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원하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겠다면 요금할인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정부로서는 충분히 제도적인 조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언한 이 기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먼저 정하고 방통위가 나중에 정하고, 그것이 누가 선이고 후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기계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부 고시에 보면 5%까지는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한다고 하지만 플러스·마이너스 5%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일치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처로부터 미래부와 그간 어떤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은 각자가 하게 되는 것이어서 꼭 미래부가 먼저 요금할인을 정하고 저희가 뒤따라서 지원금 규모를 정하고...,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 먼저 검토하기 시작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말기유통법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부처가 협의해 가면서 비슷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 고시 내용을 보면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단말기 지원금 문제를 보면, 방통위는 지원금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래부는 요금할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고시 내용을 보면 서로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판단에 조금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그리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시장점유율의 변화, 또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래부는 요금할인 혜택을 가입자당 월 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 평균 수익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아주 산술적으로 명확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당 월 평균 지원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가입자당 월 평균 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요금할인율을 결정하는 구조가 굉장히 산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산술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마이너스 5%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원금과 요금할인율이 이렇게 딱 일

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항상 상응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인 상황을 보고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미래부는 굉장히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상황에 대해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상한액 때문에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수많은 언론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 그런 것이 수치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러프(rough)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항상 2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극심한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큰 대의가 있었고, 또 상한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동사나 제조사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동사들이 지원금을 주는 액수라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추이를 보면 올 초에는 지원금이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맞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과열이 되고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때는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은 안정이 됐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지원금을 당연히 내리겠지요. 많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경쟁을 하면서도 최대한 자기들의 노력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지요. 기업이 손해를 보고서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조금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안정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평균적인 개념에서 항상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지원액을 강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영업의 범위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도, 이용자들에게도 좀 더 나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상한을 철폐하자는 말씀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말기유통법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단말기유통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상한액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지원금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용자 차별이 대폭 감소했다, 요금제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난 지표들을 볼 때 소비자 전체 혜택은 증가했다”, 이것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6개월에 대한 저희 위원회와 미래부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014년 가계통신비는 2008년 이후 최초로 전년 동기 대비 4.1%, 직전 분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공식 평가와 달리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언론은 "모두가 비싸게 단말기를 사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이 여전히 비싸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결과에 대한 정부와 이용자들의 평가 간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용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상한 상향을 검토하고 요금할인을 상향을 검토하는 등 정책을 개선하고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도 아마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자신도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들의 이익보다는 이용자들의 이익이, 혜택이 더 크도록 정책은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통신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편익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따져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와 있는 지원금 상한 상향안을 보더라도 제가 지난 6개월 전에 최초 지원금 수준을 결정할 때 냈던 의견에 비하면 그에 못 미칩니다. 그 전제 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 때 판단근거가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위원님들 간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자당 평균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 즉 이동통신가입자 1인당 평균예상 이익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이폰6 등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신규 주력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인 3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폰5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프를 보면 지원금이 최근에 오히려 하향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상황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 만에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 심화, 또는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상한액은 시장 특성상 일단 높여 놓으면 다시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통신비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핵심은 2가지라고 봅니다. 하

나는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말기 가격 인하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용자들의 많은 불만은 초기 구입비용, 즉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입비 폐지, 그다음에 기본료 폐지 추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사들의 출고가를 인하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는 법적 근거나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시키기는 여의치 않습니다.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상되는 갤럭시6의 출고가가 지난 갤럭시5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출고가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낮게 내지는 갤럭시5와 거의 비슷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갤럭시5와 비슷하지요. 갤럭시5에 비해서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신규나 전략 단말기의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여전히 고가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5조 9,0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IT 모바일 부분은 40% 정도인 2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갤럭시5와 비교했을 때 갤럭시6의 판매가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갤럭시6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2/4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는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 활성화나 이용자 권익증진 등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금 상한을 상향하고 미래부에서 할인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 제조사가 이익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볼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의 목표는 이용자 혜택 증진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가계통신비의 비중을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요. 가계통신비 비중, 전통적인 국민생활, 민생을 나타내는 앵겔계수나 또는 차별, 불편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보다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한 민생 경제지표가 가계통신비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목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 정책으로 구현해 가야지, 정부가 어떤 단기적이고 대중요법적으로, 눈앞의 선심이나 인기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진짜 망가지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상향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용자 부담이, 국민 부담이 더 악성으로 갑니다. 전가효과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3년 뒤에 미래 이용자에게 통신비 인상의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가계통신비가 조금 주는 것 같지만 한 2, 3년 뒤가 되면 돈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몽땅 다 다시 또 통신비에 전가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뒤에 정책당국이 써야 할 정책수단을 미리 당겨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써야 할 정책당국의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는 파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 앞의 문제, 눈 앞의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아주 단기적이고 대중요법적으로 한다면 불과 몇 년 뒤에는 그것이 정책당국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은 단계적으로 시장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린다, <제2안>은 10% 인상입니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미래부에서 현행 요금할인을 12%를 20%로 올린다, 그것은 70% 인상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도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양식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번 <제2안>은 그런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이번 지원금 상한액 상향 조정 논의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며 그 논의에 제가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가 10월 1일에 고시를 시행할 때 상한액을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정한다고 고시를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점을 고려하고 논의한 끝에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25만원에서 35만원 그 범위 내에서 하향을 하든 상향을 하는 것인데, 지금 33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에서 우려하는 이유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튜닝(tuning)을 하는 것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논의 끝에 상한액의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없고 간에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능하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 또 단말기 이용요금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구성이 어떻든 간에 또 업무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저희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이상 국민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원금이 상향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지원금을 얼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의 상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한을 상향하더라도 각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록 상한이 올랐더라도 거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지원금 상한액 보다 더 적게 지원금을 고시하고 있어서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되더라도 상향된 지원금보다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고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는 있을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최대한에 여유를 더 주는 그런 의미의 상향이라고 할 것이고, 고시에서 25만원에서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이미 그 범위 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음을 전제로 해서 그 범위를 결정해 놓은 것이어서 저희들이 상한을 결정할 때에는 고시 제2조 제2항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개월마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상한을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인해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저로서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인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출고가 인하가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갤럭시S5와 갤럭시S6의 가격이 비슷하니까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갤럭시S6가 갤럭시S5보다 굉장히 우수한 기능들을 더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출고가가 낮아진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떠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출고가가 낮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단말기 구입가격이 낮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출고가를 낮추자는 것이지, 단순한 출고가 인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민들의 관심은 자신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 구입가격의 인하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상한이 상승됐을 때 비록 출고가 인하가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조사로서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여서 제조사가 장려금을 더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 결국에는 더 상향되도록 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될런지는 지금으로서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지원금의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되는 것이 몇 퍼센트 인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의 인상과는 달리 이것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과 다수 위원들께서는 지원금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 결정이 된다면 지원금 상한을 상향하는 것의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사들과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제가 회의 시작할 때 말씀 드렸듯이 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찬

반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위원회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원회 제도를 통해 나오는 논의결과는 논의 과정이 충분하고 합리적일 때 그것의 정당성이 더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6개월마다 하는 충분히 예상되는 안건 들입니다. 이번 사안 처리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사무처에서 내용 검토나 미래 부와의 협의나 아니면 여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갑자기 논의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합하면 거의 3일 연속으로 위원님들이 사무처와 같이 장시간 이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위원들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른 것을 많이 느껴서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든지 간에, 고 위원님은 다음에 또 6개월 임박해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전에 한 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는 공감의 폭을 넓혀 놓아야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슈든, 이와 유사한 다른 이슈든 논의를 할 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평소에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과 관련된 또 단말기유통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단말기지원금이 예를 들어 일부 실질적으로 공시된 지원금이 오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원래 단말기유통법의 기본 취지인 이용자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물론 요금제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요금제에 따른 차이가 적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중저가 요금제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미래부 업무 소관이어서 여쭙 보는데 미래부에서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보다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위 말하면 분리요금제의 가입률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입 시에 그런 일종의 차별이나 거부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희망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조치들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통사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요금제별 차별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고시를 통해 어디까지 차별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원금이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차별될 수 있도록 미래부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잠깐 있기에 혹시 미래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 봤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한액의 인상률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10%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 직무 중 하나는 이용자 혜택 증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차별금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급격하게 혜택을 올리면 종전의 가입자, 직전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달까지는 30만원 상한액에서 거래하던 이용자들이 태반이고 절대 다수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5% 포인트도 아니고 10% 포인트 인상된 상한액의 환경 아래에서 단말기를 구입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차별입니다. 이용자 차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경우,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상한액이 바로 지원금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미래부의 경우 요금할인율은 직결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갑자기 인상하면 그것은 정말 기존 절대다수 가입자를 새로운 신규 가입자, 극소수의 가입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2%에서 20%로 인상하면 갑자기 8% 포인트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직전까지는 12%밖에 할인을 못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20%를 할인받는다면 그것은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정책은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 상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한 2, 3% 올려봤다가 그다음에 또 뭔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또 2, 3% 올리고 이렇게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아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수행, 정체성, 독립성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통신쪽은 규정에 없고 적시되어 있지 않아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실정법에 담을 수 없듯이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방통위의 정체성이 독립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다 독립성에 기반 해서 해야 합니다. 방송뿐만 아니고 통신업무도 우리가 수행하는 다른 업무도, 어떤 정부기구보다 독립성과 정책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아까 허원제 부위원장님께서 상한선 철폐 주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금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원금 자체의 철폐 주장도 있습니다. 또 완전자급제, 그러니까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판매하고, 요금관리는 이통사에서 하고 이렇게 완

전히 나누자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갈지, 2, 3년 뒤의 정책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정책결정에 참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끝으로 이용자 혜택증진을 반대할 정책당국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자신은 얼마든지 가능하면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켜 주는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적 이용자 차별문제입니다. 극소수의 신규가입자, 이용자의 혜택을 올린다고 절대다수의 기존 가입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정부 당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참 이것이 고민입니다. 5만명 중에 800 몇 십 명이지만 소수라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절대다수의 기존 가입자들은 정말 잠재적인 말하자면 매우 수동적이고 반사적인 다수의 차별대상자들입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또 우리로서는 그것을 지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 주지 못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기권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33만원 상향 부분과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업무는 저희가 논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미래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미래부의 업무인 것입니다. 33만원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이 30만원인 당시에 가입한 사람과 33만원으로 상향되었을 때 가입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용자 차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 이동통신사들은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느 시기에 단말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 경우의 존재 그 자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용자 차별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미래부에서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렸을 때, 그 시점에서 12% 받던 사람도 20%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12% 이용자와 20% 이용자간 차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미래부에서 전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12% 받던 사람도 20%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인받는 사람과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도 공시지원금이나 요금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더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차별 문제는 제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단말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차별을 많이 받아왔던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차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

각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미래부의 방침이 확실합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그것은 맞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통사들은 종전 가입자 12%는 고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통사들이 정부가 무서우니까 새로 생긴 법규에 소급적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법규의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통사들이 그렇게 자기 살을 베면서 할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종전의 절대 다수 가입자의 요금할인을 12%는 고정입니다.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요”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확인을 해서….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도 아닌데 타 부처의 업무를 확실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요금할인을 12%의 이용자를 20%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은 나중에 확정된 연 후에 우리가 분석하고 논의하면 됩니다. 방통위 업무 중에 이용자 차별이나, 아니냐 이런 것을 조사 제재할 때 많이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적인 개념이나 수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 1원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100원의 차이도 차별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고, 무슨 규정이나 숫자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을 보고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결정을 해야 할 시기에 논의하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평소에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 논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김재홍 위원님께서서는 기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서는 모두 33만원으로 상향하는 <제2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정확히 말씀 드리면 다수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수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만원을 상향하여 33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고사항

가.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비공개)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6분 폐회 】